

VI. 제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지 못한 것은 깊은 불안과 강력한 군사주의, 그리고 비양심적인 인적 비용 등이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이 끔찍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정책은 수십 년 동안 실패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미국과 남한, 그리고 북한이 공정하고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즉각적으로 줄일 것을 권고한다. 평화협정으로 모든 당사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시권이 소멸했음을 명백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핵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더 넓은 안보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상호 유익한 단계다. 무력 사용을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도구로서, 평화협정은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의 성실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전례 없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다.

평화협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협상과 결론이 다음의 원칙에 기초할 것을 권고한다.

1. **지체 없는 평화.** 당사자들은 안보 불안을 잠재우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지체나 전제조건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전제조건은 없다. 당사자들은 정치적 전제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구속력이 있는 평화.** 당사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전쟁의 종식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구속력 있는 협정의 비준을 향한 구속력 없는 전쟁 종식 선언을 먼저 할 수도 있다.
3. **전쟁의 최종적인 종식으로서의 평화.** 당사자들은 평화협정이 전쟁의 최종적인 종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시의 권리가 끝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8 호가 더 이상 무력 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평화협정이 휴전과 유엔 사령부의 종식을 암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휴전 협정에서 선언된 국경을 인정해야 한다.
4. **평화체제의 기반으로서의 평화.** 당사자들은 무력사용을 넘어 안보위기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평화를 결론지어야 한다. 그들은 평화가 다른 측면들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는 신뢰 구축 기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의 최종 실현과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위기 해결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5. **의무로서의 평화.** 당사자들은 평화협정이 어느 한 쪽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는 상호 호혜적이며 그 자체로 의무다. 당사자들은 평화협정을 무력사용을 넘어 사안에 대한 협상카드로 도구화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상호주의와 공정성의 기초 위에서 협상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협상의 본질이 바뀌고 평화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평화협정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과 평화체제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할 것을 권고한다.

- 1. 협력과 공유 기반의 안보:** 평화체제는 전쟁 중에 우세했던 대립적, 제로섬 억제 논리와는 반대로 협력적, 공유적 안보 추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평화체제는 신뢰가 낮은 환경에서 군비경쟁을 벌일 때보다, 공정한 군비감축을 실현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할 때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 냉전, 분열의 종식:** 평화체제는 이 지역의 냉전 블록 분할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평화체제는 각 측의 존재권, 주권평등, 그리고 그들 자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상호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평화체제는 외국의 간섭 없이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한국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3. 핵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평화체제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실현하는데 있어 모든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평화체제는 막대한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가 치명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지니고 인간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 4. 평화에 대한 권리:** 평화체제는 평화에 대한 권리의 완전 실현과 전쟁이 없는 삶이 유엔이 선포한 권리와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주요한 국제적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평화체제는 성별, 정치적 지향성, 국적, 기타 구별되는 특징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 5. 여성 참여:** 평화체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호에 제시된 여성, 평화, 안보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여성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평화체제는 평화를 옹호하는 여성과 시민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군사주의와 전쟁으로부터 안보를 재정의하고, 인간의 필요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페미니스트적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